

# 其他案件審查報告書

## 1. 심사경과

안건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① 2009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(3차)안	2009.4.14	2009.4.15	2009.4.20	2009.4.20	회계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① 2009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[3차]안

#### 가.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

#### □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

구분	시유지	국유지(기획재정부)	비고
위치	수안보면 수회리 11-1번지 외 8필지	안림동 842-1번지 외 11필지	
면적	69,390 m <sup>2</sup>	31,134 m <sup>2</sup>	
공시지가 재산가액	774,639천원	731,762천원	
감정평가액	1,565,971천원	1,632,464천원	
이용현황	학교용지 및 주변임야	농지 및 임야	
교환차액	66,493천원(충주시 부담금)		

## □ 교환방법

- 경찰청의 교환 선행과제 해결
  -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경찰청에서 관리환 받아 교환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승인 및 관리청과의 인수인계
    - 기획재정부 관리환 및 교환 승인 : 2009. 4. 8(완결)
    - 관리청과의 인수인계(기획재정부 ⇒ 경찰청)
      - 2009. 4 ~ 5월 예정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감정 평가액에 의한 교환 (충주시↔경찰청)
- 교환차금은 금전으로 납부(충주시 66,493천원 납부예정)
  - 교환차금은 추경에 편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# 가.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

- 본 건은 중앙경찰학교 부지 일부와 이에 접해 있는 시유지 69,390평방미터를 경찰청으로 이전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림동 842-1번지 일원 31,134평방미터의 토지를 시 소유로 이전하는 등 상호간 교환하려는 것임.
- 중앙경찰학교 내에 위치해 있는 충주시 소유의 토지는 운동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용지로 활용되고 있어 중앙경찰학교의 입장에서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방법이 없는 토지이며,

안림동에 위치한 국유지는 안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하여 있고 12필지의 토지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집단화 된 토지이므로 시의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토지라 하겠음.

- 따라서, 본 건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취지에 맞게 시유재산을 운용하려는 것이므로 상호 토지를 교환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고 행정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### ① 2009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3차)안

#### ▶ 질의 : 경찰학교 이전 계획은?

- 답변 :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, 중앙경찰학교 측에서 시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불가통보하여 재산을 교환하게 되었음.

#### ▶ 질의 : 취득하고자 하는 곳의 활용도가 낮지 않은가?

- 답변 : 앞으로 개발되면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.

#### ▶ 질의 : 무상임대가 가능한가?

- 답변 : 국가기관이 공공용으로 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가능.

#### ▶ 질의 : 타 기관에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 교환할 용의는 없는가?

- 답변 : 노력하겠음.

## 5. 심사결과

### ① 2009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3차)안

: 원안가결

## 6. 붙임

### ① 2009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3차)안 1부. 끝.